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김은혜·권영세·주호영

박수민 · 김정재 · 윤상현

신동욱 • 한기호 • 안철수

주진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.

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,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,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,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 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,

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(안 제18조 및 제21조).

- 나.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(안 제25조 및 제55조).
- 다.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, 직계존·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, 미성 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(안 제53조).
- 라.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 정함(안 제53조의2).

### 법률 제 호

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"2억원"을 "5억원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5억원"을 각각 "10억원"으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5억원"을 "10억원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"을 "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물가변동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그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단서 중 "5억원"을 "10억원"으로 한다.

제53조제1호 중 "6억원"을 "12억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5천만원"을 "1억원"으로, "2천만원"을 "4천만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5천만원"을 "1억원"으로 한다.

제5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"1억원"을 각각 "2억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"1억원"을 각각 "2억원"으로 하며, 같 은 조 제3항 중 "1억원"을 "2억원"으로 한다.

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액에서"를 "금액에 물가변동 및

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그 금액에서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제18조(기초공제) 거주자나 비거       | 제18조(기초공제)      |
|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액에서 <u>2억원</u> 을 공제한다.   | <u>5억원</u>      |
| 제21조(일괄공제) ① 거주자의 사      | 제21조(일괄공제) ①    |
| 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액을 합친 금액과 <u>5억원</u> 중 큰 | <u>10억 원</u>    |
|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다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만, 제67조 또는 「국세기본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없는 경우에는 <u>5억원</u> 을 공제한 | <u>10억원</u>     |
| 다.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|
| 제24조(공제 적용의 한도) 제18      | 제24조(공제 적용의 한도) |
| 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9   |                 |
| 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도로 한다. 다만, 제3호는 상속       |                 |

세 과세가액이 <u>5억원</u>을 초과하 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### 1. ~ 3. (생략)

제25조(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 세최저한) ① 상속세의 과세표 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<u>다음 각 호의 금액</u> 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### 1. • 2. (생략)

### ② (생 략)

제28조(증여세액 공제)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(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)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제4항 또는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

| <u>10억원</u>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제25조(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   |
| 세최저한) ①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        |
| 에 물가변동 및 재정여건 등을     |
|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  |
| 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    |
| 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      |
| 를 곱한 다음 그 금액에서 제2    |
| 호의 금액을 뺀 금액          |
| 1.•2. (현행과 같음)       |
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
| 제28조(증여세액 공제) ①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
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 액이 <u>5억원</u>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② (생 략)

- 제53조(증여재산 공제)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(제53조의2에 따라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)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  - 1.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6억원
  - 2. 직계존속[수증자의 직계존속 과 혼인(사실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5 3조의2에서 같다]으로부터 증

| - <u>10억원</u>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r>② (현행과 같음)<br>제53조(증여재산 공제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<u>12억원</u>              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여를 받은 경우: <u>5천만원</u> 다만,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<u>2</u>천만원으로 한다.

3. 직계비속(수증자와 혼인 중 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)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천만원

4. (생략)

제53조의2(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)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 로부터 혼인일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 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)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 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
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

| <u>1 기 단</u>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4천만</u>                |
| <u>원</u><br>3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1억원</u><br>4. (현행과 같음) |
| 제53조의2(혼인·출산 증여재산         |
| 공제) ①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2억원</u>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2억원</u>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     |

\_1어의\_\_\_\_

자녀의 출생일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을 말한다) 또는 입양일(「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)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 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그 증여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 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 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 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<u>1</u>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

## ④ ~ ⑦ (생 략)

제55조(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 저 세최저한) ① 증여세의 과세표

| 2억원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<u> 2억원</u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③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<u>2</u>            |
| <u>억원</u>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 |
| 1155조(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 |
| 세최저한) ①             |

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<u>금액에서</u> 대통령 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.

-----금액에 물가변동 및 재 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 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그 금액에서-----

- 1. ~ 4. (생략)
- ② (생략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